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10. 23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: 2018년 10월 12일

나. 발 의 자: 이미자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18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8. 10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미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“외국인 자율방범대”에 대한 구성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에 원활한 치안 유지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서 “외국인 자율방범대”에 대한 사항 신설(안 제1조~제2조)
-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명칭, 조직, 임무 규정 신설(안 제3조~제5조)

- 외국인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근거 신설(안 제6조)
- 자율방범연합대 및 포상 대상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(안 제9조,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목)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질서유지에 관심이 많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자율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보호와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‘외국인 자율방범대’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개정안의 주요내용은,
 -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“외국인 자율방범대”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명칭, 조직,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8조에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 - 안 제9조와 제12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대 및 포상 대상에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
- 검토 결과, 본 조례 안은 기 운영 중인 대림2동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, 우리구의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서, 이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, 기회 제공과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 또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.

4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기존 자율방법대원 중 거주지 외의 동에서 활동하는 대원이 있어 개정 조례 공포 후 신입 방법대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.
- 방법일지와 활동실적의 기록물 보존기간 및 지도·점검 실시에 있어 대다수의 타구 자율방법대의 경우 보존기간 2년에 연 2회의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.

나. 수정내용

- 안 제4조 제3항 중 “단, 개정조례 공포 후 신입 방법대원부터 적용한다.”는 단서를 신설한다.
- 안 제5조 제3항 중 “5년간”을 “2년간”으로 한다.
- 안 제10조 제2항 중 “분기별로”를 “반기별로” 한다.

5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 27 호 | 관련 번호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
제안연월일 : 2018. 10. 22.

제안자 : 허홍석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기존 자율방범대원 중 거주지 외의 동에서 활동하는 대원이 있어 개정 조례 공포 후 신입 방범대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.
- 방법일지와 활동실적의 기록물 보존기간 및 지도·점검 실시에 있어 대다수의 타구 자율방범대의 경우 보존기간 2년에 연 2회의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.

2. 수정내용

- 안 제4조 제3항 중 “단, 개정조례 공포 후 신입 방범대원부터 적용한다.”는 단서를 신설한다.
- 안 제5조 제3항 중 “5년간”을 “2년간”으로 한다.
- 안 제10조 제2항 중 “분기별로”를 “반기별로”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제3항 중 “단, 개정조례 공포 후 신입 방법대원부터 적용한다.”는 단서를 신설하고, 안 제5조 제3항 중 “5년간”을 “2년간”으로 하고, 안 제10조 제2항 중 “분기별료”를 “반기별료”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|--|
| 제4조(조직 및 구성) <u><신 설></u> | 제4조(조직 및 구성) ③ 동별 방법대원은 주 거지 또는 사업장 소 재지가 소속 방법대의 신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 제4조(조직 및 구성) ③ 동별 방법대원은 주 거지 또는 사업장 소 재지가 소속 방법대의 신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u>단, 개정조례 공포 후 신입 방법대 원부터 적용한다.</u> |
| 제5조(임무) <u><신 설></u> | 제5조(임무) ③ 방법대와 외국인 자 율방법대는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활동 을 실시한 후 활동내 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고, 그 기록을 <u>5년</u> 간 보존하여야 한다. | 제5조(임무) ③ 방법대와 외국인 자 율방법대는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활동 을 실시한 후 활동내 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고, 그 기록을 <u>2년</u> 간 보존하여야 한다. |
| 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② <u>구청장은 방법대 의 활동에 관하여 연합대에 위임하 여 방법일지(별지 제4호서식) 작성 및 활동 실적 등</u> | 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② 구청장은 방법일지 (별지 제4호서식) 작 성 및 활동실적을 분 기별로 지도·점검하 여야 한다. | 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② <u>구청장은 방법일지 (별지 제4호서식) 작 성 및 활동실적을 반 기별로 지도·점검하 여야 한다.</u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<p>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.</p>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주민 및 외국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(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)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외국인 등”이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4. “외국인 자율방범대”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하여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 자율방범대””를 “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 자율방범대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외국인자율방범대)”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대원”을 “대원(이하“방범대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동별 방범대원은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방범대의 신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개정조례 공포 후 신입 방범대원부터 적용한다.
- ④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구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여건,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

직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대장·부대장·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⑥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은 외국인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⑦ 그 밖에 방범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칙으로 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 중 “영등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·순찰
2.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
3.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·지원
4.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

③ 방범대와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방범대”를 “방범대(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)”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지원 시 대원수”를 “지원할 경우, 소속 대원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“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방범대에 대한”을 “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방범대”를 “방범대(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)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방범일지(별지 제4호서식)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별로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제12조 중 “대원에게”를 “외국인 자유허방범대와 각 소속 대원에 대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주민 및 외국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(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)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| <p>제 2 조 (정 의)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외국인 등”이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</p> <p>4. “외국인 자율방범대”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하여 방범순찰 등의</p> |

3. (생략)

제3조(명칭) 방법대의 명칭은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 자율방법대"로 하고 연합대의 명칭은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법연합대"로 한다.

제4조(조직 및 구성) ① (생략)

② 방법대는 대장·부대장·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<신설>

<신설>

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.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3조(명칭) -----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 자율방법대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 외국인 자율방법대)"-----
-----.

제4조(조직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대원(이하"방법대원"이라 한다) --.

③ 동별 방법대원은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방법대의 신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개정 조례 공포 후 신입 방법대원부터 적용한다.

④ 외국인 자율방법대는 구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여건,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·운영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5조(임무) 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2. (생략)
- 3.·4. (생략)
5.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필요로 하는 사항

<신 설>

할 수 있다.

⑤ 외국인 자율방법대는 대장·부대장·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⑥ 외국인 자율방법대 대원은 외국인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⑦ 그 밖에 방법대 및 외국인 자율방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임무)

①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
- 3.·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서울

특별시 영등포구청장-----

② 외국인 자율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·순찰
2.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

<신 설>

제7조(신고 등) ① ~ ④ (생략)

<신 설>

제8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방법대의 원활한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시 대원수와 전년도 활동실적, 제10조에 따른 지도·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.

3.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·지원

4.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

③ 방법대와 외국인 자율방법대는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고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외국인 자율방법대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경비 지원 등) ① -----

- 방법대(외국인 자율방법대 포함) -----

② -----
지원할 경우, 소속 대원 수-----

-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자율방범연합대) ① 방법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법대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에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방법대의 활동에 관하여 연합대에 위임하여 방법일지(별지제4호서식) 작성 및 활동 실적 등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) 구청장은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대원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

③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-----

제9조(자율방범연합대) ① 방법대(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)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구청장은 방법일지(별지 제4호서식)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별로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제12조(포상)

-----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각 소속 대원에

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.

대하여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미자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27 |
|----------|----|

발의년월일 : 2018년 10월 12일

발의자 : 이미자 의원 외 7명

1. 제안이유

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“외국인 자율방범대”에 대한 구성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 의 원활한 치안 유지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서 “외국인 자율방범대”에 대한 사항 신설
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명칭, 조직, 임무 규정 신설
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외국인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근거 신설(안 제8조)
- 라. 자율방범연합대 및 포상 대상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
(안 제9조, 제12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(외국인 자유행방범대 활동 지원)

다. 입법예고 (2018. 10. 5 ~ 10. 11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주민 및 외국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(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)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외국인 등”이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4. “외국인 자율방범대”란 지역사회 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하여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 자율방범대””를 “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 자율방범대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외국인자율방범대)”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대원”을 “대원(이하“방범대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동별 방범대원은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방범대의

신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구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여건,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대장·부대장·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⑥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은 외국인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⑦ 그 밖에 방범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칙으로 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 중 “영등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·순찰
2.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
3.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·지원
4.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

③ 방범대와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방범대”를 “방범대(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)”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지원 시 대원수”를 “지원할 경우, 소속 대원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“대원이 과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방범대에 대한”을 “소속 대원이 사회

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방법대”를 “방법대(외국인 자율방법대 포함)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방법일지(별지 제4호서식) 작성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제12조 중 “대원에게”를 “외국인 자율방법대와 각 소속 대원에 대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주민 및 외국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(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)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| <p>제2조(정의)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외국인 등”이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</p> <p>4. “외국인 자율방범대”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법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하여 방법순찰 등의</p> |

3. (생략)

제3조(명칭) 방법대의 명칭은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 자율방법대"로 하고 연합대의 명칭은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법연합대"로 한다.

제4조(조직 및 구성) ① (생략)

② 방법대는 대장·부대장·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.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3조(명칭) -----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 자율방법대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 외국인 자율방법대)"-----
-----.

제4조(조직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대원(이하"방법대원"이라 한다) --.

③ 동별 방법대원은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방법대의 신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외국인 자율방법대는 구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여건,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외국인 자율방법대는 대장·

<신 설>

<신 설>

제5조(임무) 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 략)
2. (생 략)
- 3.·4. (생 략)
5.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필요로 하는 사항

<신 설>

부대장·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⑥ 외국인 자율방법대 대원은 외국인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⑦ 그 밖에 방법대 및 외국인 자율방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임무)

①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
- 3.·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-----

② 외국인 자율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·순찰
2.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

<신 설>

제7조(신고 등) ① ~ ④ (생략)

<신 설>

제8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방법대의 원활한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시 대원수와 전년도 활동실적, 제10조에 따른 지도·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

3.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·지원

4.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

③ 방법대와 외국인 자율방법대는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고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외국인 자율방법대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경비 지원 등) ① -----

- 방법대(외국인 자율방법대 포함) -----

② -----
지원할 경우, 소속 대원 수-----

가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 중단을 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그 밖에 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자율방법연합대) ① 방법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법대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에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방법대의 활동에 관하여 연합대에 위임하여 방법일지(별지제4호서식) 작성 및 활동 실적 등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) 구청장은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

-.

③ -----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-----

제9조(자율방법연합대) ① 방법대(외국인 자율방법대 포함)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구청장은 방법일지(별지 제4호서식) 작성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제12조(포상)-----

기여한 방법대 및 대원에게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
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 따
라 표창을 할 수 있다.

----- 외국인
자율방법대와 각 소속 대원에
대하여-----
-----.